

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공고 제2024-4호

## 『행정대집행 계고』 공시송달 공고

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(목상동 218-21 등 3필지 등 4건) 내 「국유재산법」 제7조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(두릅나무 등) 일체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에 의거하여 철거하고자 하나, 철거 의무자 성명·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「행정대집행법 시행령」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처분내용 :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 경작물 등 행정대집행 계고
2. 처분근거 : 국유재산법 제74조,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
3. 공고기간 : 게시일로부터 15일간(2024.7.3.~2024.7.17.)
4. 위 치
  - 1)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18-21 등 3필지
  - 2)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3-6 등 6필지
  - 3)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5-19 등 4필지
  - 4)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5-26 등 5필지
5. 대상내역 : 무단 경작물[농작물(두릅나무 등 포함) 일체]
6. 공고장소 : 대덕구청 게시판,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, 현장부착 등
7. 공고내용
  - 귀하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, 제8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2024년 7월 17일(수)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할 것을 계고하며,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그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8. 담 당 자 :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차장 윤여중 (☎042-607-5084)

2024. 7. 3.

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

